

자산보관 •관리보고서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보관•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

문의가능 전화번호 : 02-2004-0065/6955-1004

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- 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 키움KOSEF독일DAX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[주식]
- 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: 증권집합투자기구(주식형)
- 다. 보관 • 관리기간: 2024.01.01 - 2024.12.31
- 라. 집합투자업자: 키움투자자산운용
- 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: 미래에셋증권, 메리츠증권, NH투자증권, KB증권, DB금융투자, 키움증권

2.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변경일자	변경사유	성명	협회등록번호
2024/04/04	신규	김종협	2112000006
2024/04/03	말소	노아름	2110000434

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6. 회계감사인의 선임 • 해임에 관한 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

- ☐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
 - 부합함
- ☐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 - 적정함
- ☐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 - 해당사항 없음
- ☐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
 - 공정함
- ☐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
 - 적정함
- ☐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 • 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
 - 일치함
- ☐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
- 해당사항 없음

- ☐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• 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
- ☐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
- 해당사항 없음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